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1나2253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1나22537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1237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의 관리인 D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덕교

변론종결 2022. 10. 20.

판결선고 2023. 1. 26.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12379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D1)에게 의정부지방법원 E 경매사건에서 배당된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에 2019. 9.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85,713,393원 범위 내에서 부인한다'는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은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법상 청구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임을 명시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12행부터 제3쪽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D가 2019. 9. 9.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급의 정지 또는 이에 임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가 있는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가 있는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대하여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의 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용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등 참조), D가 2019. 9. 6.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9.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는 2020. 10.경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98288)을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D가 지급의 정지가 있기 전 60일 혹은 6월 이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가 지급의 정지가 있기 전 60일 혹은 6월 이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윤영수, 판사 서동인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주식회사 F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D는 주식회사 F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D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D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D가 서울회생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의 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소송수계하였는바, 이하 D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D의 관리인 지위에서 한 행위는 원고의 행위로 기재하고, 그 외 D 개인의 지위에서 한 행위는 D의 행위로기재한다.

2) 원고는 2022. 4.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법령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명시하였는바, 위 법률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